「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8월 23일, 남진삼 의원 발의
- O 회부일자: 2022년 9월 15일 회부
- O 상정일자: 제27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2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남진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 책임이 있는 바,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3조)
- O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- O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(안 제5조)
-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(안 제6조)
- O 관련 교육 및 홍보 (안 제7조 ~ 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O 본 조례안은

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·지원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.

O 주요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는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
-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 의무를 각각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

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'2020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'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의 1순위는 일반가정(39.1%), 2순위는 장애인거주시설(14.9%)로 조사되었고 학대 행위자의 26.4%는 기관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전체 장애인 학대 사건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'18년 21%, '19년 23%, '20년 14%로 확인됩니다.



○ 또한, 인권위는 '21년 상·하반기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로 과밀수용, 건강권 보호 미흡 등 법·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,

「장애인복지법」제9조에 따라
지자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 책임이 있으므로
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,
피해장애인 보호 노력 등을 의무화한
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
상위법 위반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.